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35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이학영 · 박 정 · 김현정
박정현 · 이용우 · 한병도
한민수 · 이정문 · 조정식
안호영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등”)이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존재함. 그런데 현행법상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는 규정은 존재하나,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하수급인등은 공사 기간의 지연이나 비용 부담,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작업중지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작업중지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하도록 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하수급인등에게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수급인등의 작업중지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계약체결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제36조제1항 중 “설계변경 또는”을 “설계변경,”으로, “변동에”를 “변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계변경 또는”을 “설계변경,”으로, “변동에”를 “변동 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에”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제5항제2호의2에 따른 작업중지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생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⑤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2의2. <u>계약체결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

② -----
-----설계변경,-----
-----변동 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에-----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u><신설></u> ② (생략)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제22조제5항제2호의2에 따른</u> <u>작업중지 행위</u> ② (현행과 같음)
--	---